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6 - 154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와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낙시어선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역에서 낙시어선업을 하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그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 ① 선외기를 설치한 낙시어선과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
- ②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선내기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00 ~ 22:00까지로 한다. 단,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 이상 선내기 낙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시간을 적용한다.
- ③ 제2항 단서의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 이상 선내기 낙시

어선은 야간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1호에서 정한 어로·항해 금지해역에서의 어로·항해 금지시간(22:00~03:00) 준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지시간 중 금지해역으로의 입항을 원할 경우, 어업무선국과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051-704-3895) 및 출입항 신고소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
3. 제1호에 따른 어로·항해 금지시간외 야간 출입항 시에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
4. 제1호에 따른 어로·항해 금지시간 중 연안에서 3마일 이내 어로 및 조업 금지

제4조(영업구역)

- 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부산광역시 관할 수역으로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부산항 정박지내의 해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 ③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모든 도서 및 갯바위, 간출암에 낚시승객을 안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외 지역 중 소유자나 관리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및 관리청이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VHF(DSC)통신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3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2. 3톤 이상 5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 이상

제5조(야영금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안내할 수 있는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경우에 그 승객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낚시장소에 낚시어선을 야영장 주변에 대기시키고 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낚시어선업자가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타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구·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명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및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는 비상시 승객을 치료할 수 있는 밴드, 붕대, 소독액(과산화수소, 포비돈, 에탄올 등), 상처치료 연고 등의 구급약품을 낚시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 통신, 기관, 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또는 VHF(DSC)

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단, 출입항신고기관(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에게 출항 전에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야 한다.
9.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에게 본 고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선원의 고시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
10.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면허어장에 뗏목 등 잡종선(널빤지, 합성수지류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낚시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객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3.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바.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동의를 미착용하는 행위
 - 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아.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
- 자.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
- 6.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 7.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해운대구 고시 제 2006-52호(2006. 5. 3.)는 폐지한다.
3.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해운대구 고시 제 2012-162호(2012. 11. 21.)는 폐지한다.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검은색

2) 바탕: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3.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하는 사항 게시문 예시

승선정원 명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승객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2)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 3)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바.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동의를 미착용하는 행위
 - 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아.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
 - 자.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 6)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합니다.
- 7)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